

## IT법학협동과정 운영 내규

제정 2014. 3. 1

개정 2020. 7. 2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이하 'IT법학협동과정')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IT법학협동과정의 석·박사과정에 적용되며,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2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 제3조 (교육과정)

- ① IT법학협동과정의 교육과정은 법학 및 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학 석·박사과정과 공학 석·박사과정으로 편성된다. 공학 전공자와 법학 전공자들이 상호 교차하여 필수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학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융합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IT법학협동과정에는 지식재산·정보보호 분야 특화 교과목으로 구성된 공통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석사과정은 12학점을 6학점 이상을 공통과정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은 18학점 중 9학점 이상을 공통과정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 ③ 법학전공자는 공학전공 필수이수과목 중, 공학전공자는 법학전공 필수이수과목 중 박사 6학점, 석사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제4조 (과목개설)

법학전공 필수이수과목 및 공학전공 필수이수과목은 매 학기 한 과목씩 개설하도록 한다.

## 제3장 자격시험

### 제5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종합학력시험 면제 조건은 각 호와 같다.

- 석사과정 중 SCI·SSCI·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에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게재시에는 4편당 1과목)
- 박사과정 중 SCI·SSCI·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에 논문을 3편 이상 게재(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논문게재시에는 5편당 1과목)
-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최종 합격

### 제6조 (종합학력시험 구두시험)

- 응시자는 필기시험 과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구두시험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구두시험의 평가위원으로는 응시자의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임 교원 2인으로 한다.
- 구두시험은 전공지식, 소양, 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

### 제7조 (외국어시험 과목 및 면제)

- 외국어시험과목을 내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한정한다.
-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4장 학위과정

### 제8조 (학위청구논문 신청과 심사)

- 학생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후에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으로 대체하여 학술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개정 2020.7.2.>
- 석사학위,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7.2.>
-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 논문은 3명, 박사학위 논문은 5명)이 한다. <신설 2020.7.2.>

#### 제8조의 2 (석사학위 논문대체 신청과 심사)

- ① 석사학위 논문대체의 심사신청은 대학원 시행세칙이 정하는 논문심사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요건 충족 중 연구논문의 경우 추가학점(전공 6학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된 학점을 취득예정학점으로 인정받아 연구논문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2.>
- ② 추가 취득해야 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신설 2020.7.2.>
- ③ 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심사에 따른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절차는 학위논문에 준하여 시행한다.<신설 2020.7.2.>

#### 제5장 학과운영위원회

#### 제9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